

2025년 하반기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 공모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통하여 중소 전통문화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보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5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에 참여할 공급기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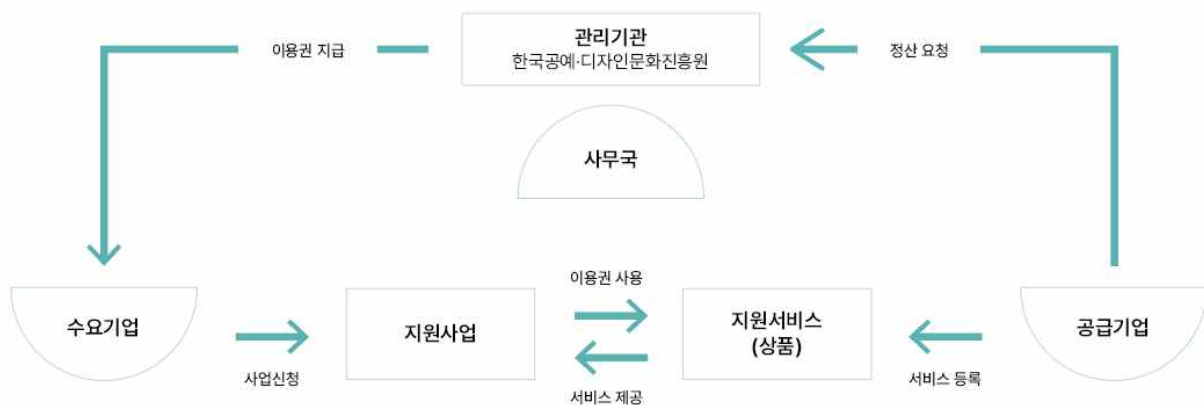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전통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필요하는 과업 수행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 도모
- 전통문화 산업 분야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한 자율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2월(10개월) · 하반기 공모 선정기업 2026년 사업 참여

□ 주요내용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은 공진원에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발급 및 정산 흐름도〉



2

공모 세부 내용

- 공모명 : 2025년 하반기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 공모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기간 : 2025년 10월 2일(목) ~ 10월 30일(목)

□ 선정발표 : 2025년 11월 예정

-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시
- ※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 공모자격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이란?

전통문화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사는 사업

- 공급기업 : 전통문화 분야 기업에 기술혁신, 디자인개선, 플랫폼 구축 등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
- 수요기업 : 이용권을 발급받아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

- ②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으로만 신청 가능

- ③ 최근 3년 이내 신청 서비스(과업) 유사 수행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기업

□ 공모분야 : 총 6개 서비스분야별 공모

서비스분야	서비스 유형
기술혁신	• 연구개발(R&D)를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료 • 전통 기술의 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등록비용 지원 • 브랜드 정품 인증, 디자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등록 비용 지원
기업경영 지원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 재무, 회계, 전략 등 일반 경영지식 교육, 분석 및 컨설팅 •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컨설팅 • 시장동향 분석, 시장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조사, 분석과 컨설팅
디자인 개선	• 브랜드 및 제품 매뉴얼, 리플렛, 카달로그 등 제작 • 포장 디자인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다품종 소량 생산 시제품 디자인 제작비 ※ 제품 양산X, 시제품 디자인 제작 시 필요한 비용
신제품 개발	• 전통문화상품* 관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및 기획료 • 전통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 웹, 모바일, 기타 사이트 구축을 통한 디지털화 지원 • 웹, 모바일, 기타 사이트의 UX, UI 등 고도화 • 스마트 기반 기술도입 및 고도화(메타버스, XR, AR, VR 등)
홍보·마케팅	• 기업/상품/브랜드 관련 매체 광고(TV, PPL 등) • SNS·검색엔진 마케팅 ※ 충전금 지원 불가, 실 집행내역 추후 첨부 • 블로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 홍보 사진(화보)·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마케팅

※ 홍보·마케팅 서비스는 단순 콘텐츠 제작비 지원이 아닌 제작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필수임

※ 시제품(샘플), 인쇄 등 제작비용 서비스 계약 금액의 20% 초과 불가

□ **접수방법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www.voucher.kcdf.kr)를 통해 접수**

- ※ 접수 시 신청서 및 공모서류 작성 후 누리집 업로드 필수
-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필수

□ **지원혜택**

-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서비스 계약 체결(최대 1억원 한도 내)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 내 서비스 등록 지원(서비스별 최대 10건)
- 수요기업 대상 매칭행사를 통한 공급기업 홍보 기회 제공
- 성과 평가를 통한 우수 기업 시상 및 홍보 지원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후 최종 대상 기업 선정**

- (서류심사) 제출 서류 기반 서류심사
- (발표평가)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절차 흐름도

사업 신청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25.10.2.~10.30		11월 1~2주		11월 2~3주 (필요시 진행)		11월 중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평가 후 평균점수 60점 이상 선정(절대평가)**

- ★ 하반기 공모 선정기업 2026년 사업 참여
- 평가항목별 배점 및 기준

구분	요소	세부 평가항목
서비스 제공내용 (55)	적절성	수행 능력/품질 등 수행기업의 핵심역량
	분야적합성	분야 적합성(전통문화 분야 역량)
	타당성	서비스 가격정책(제공단가, 수행기간 등)
	전문성	수행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25)	재정 안정성	기업의 재정 안정성 (매출액, 자산현황, 부채율 등)
	인력 안정성	인력의 안정성 (인력 현황, 상시인력 수 등)
일반현황 (20)	수행역량 (정량)	수행기업의 업력
		유사 수행 실적 건수 및 규모
		신용평가등급

□ **문의**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운영사무국	02-398-1683	b_voucher@kcdf.kr

(운영시간) 평일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의 사업계획, 집행 및 정산, 결과보고서 검수 등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진흥원 운영 규정,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매뉴얼을 따름
-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해야 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경우, 해당연도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협약체결 기간 내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 자격 재검토에 따른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필요시 공급기업 신청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공모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공모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 부정행위 판정시 자격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부가금(5배 이내)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 동의를 전제함
- 선정된 기업은 성과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균점수 60점 미만시 수행비용의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주관처가 진행하는 교육, 성과평가, 성과공유회(시상식) 등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된 공급기업이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 신청과 선정심사를 거쳐야 함
- 공급기업의 자격은 선정 후 3년간 유지되며,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해지될 수 있음

※ 연 단위 협약갱신 필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은 그 자격이 해지될 수 있다.

- 공급기업이 등록한 서비스에 3년 이상 사용자가 없는 경우
- 서비스 수행 결과 품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공급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참여가 불가하여 그 의사를 밝힌 경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 지원이 불가하고 공모 지원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이 환수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① 아래 공모 신청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제재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휴·폐업,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본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중복 참가하고 있거나 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수요기업과 대표자가 같은 기업
 - 수요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같은 기업
 - 수요기업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 정부 지원사업 제제이력이 있거나 참여 제한중인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
- ※ 대표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심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③ 제출실적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관련 서비스 분야 취급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참여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⑤ 신청기업(대표자 포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와 관련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 구성원·회원인 경우 제외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관련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

※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 구성원·회원인 경우 제외

- (규정위배 제재조치)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 －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향후 전통문화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제재조치) 사업운영위원회의 부정행위 판정 시 자격취소, 부정수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 제재부가금(5배 이내)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판정될 경우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시행함)
- (부정행위 신고센터) 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수행주체의 부정행위 발견시 아래 신고센터로 신고 가능함
 - ※ 이메일 접수 : b_voucher@kcdf.kr
- (신용 조회 동의) 동 사업에 지원·참여하는 기업은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 동의를 전제함